

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계획

2005. 05. 19



국무총리
인적자원개발·연구개발기획단

목차

I.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목표 및 중요성

II. 추진현황

III.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개편안(안)

1) 국가인적자원위원회

2) 인적자원혁신본부 : •주요업무 •업무수행절차

IV. 관련법률 개정 주요내용

V. 향후 추진 계획

I. 국가인적자원개발의 목표 및 중요성

인적자원개발의 목표

◆ 국가인적자원 정책혁신을 통한 **國家 競爭力 향상,**
雇傭의 創出 및 質 향상

※ 미국 혁신의 **3대 Agenda**(美 국가혁신전략보고서, '04.12)
- 인적자본(Talent), 투자(Investment) 확대, Infra 정비

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

2020년까지의 잠재성장을 추정 결과

노동과 자본의 「성장기여도」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나
인적자원개발 및 기술개발(TFP)의 「성장기여도」는 **증대**될 것으로 예상

▶ 인적자원 개발이 국가발전의 핵심과제

< 성장요인 분석 및 전망 >

기간	잠재성장률 (잠재성장율)	성장기여도		
		노동	자본	TFP
2000 ~2003	4.08%	2.10%	1.51%	0.47%
2003 ~2010	4.57%	1.45%	1.62%	1.50%
2010 ~2020	4.84%	0.93%	1.91%	2.00%

· 출처 :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개토론회 자료, 2005.4.8.

· TFP : 인적자원개발 및 기술혁신 등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잠재성장을 부분

II. 추진현황

대통령님 주재회의'05. 2.19 결과

1. 국가인적자원위원회(위원장 : 대통령)
정책의제(Agenda) 설정
 - 대학의 IT·BT 등 고급첨단인력 육성
 - 의료·법률·경영 등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육성
 - 대학에서의 직업교육 및 직장에서의 직업훈련 진흥
 - 국가 인력수급전망체제 구축
 - 산학협동 활성화
 - 여성, 군, 공공분야, 취약계층 인력 개발 등
2. 국가인적자원개발 **‘投資’** 관련
 - HRD 투자사업 평가조정
 - HRD 투자와 R&D 투자연계
3. 주요 **지시사항**
 - 산업계, 노동계 참여
 - 인적자원혁신본부(차관급) 설치

추진 체제

- 국가인적자원위원회,
-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
- 교육인적자원부 개편

관련법 개정

1. 인적자원개발기본법
2. 정부조직법

- **추진체제 개편(안) 및 법률개정(안) 마련**(기획단/교육부, '05.2~4)
 - 혁신본부의 조정·평가대상 **사업범위** 및 **업무수행절차** 구안
- **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**('05.5.13)를 통해 부처간 쟁점 조정

※ **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 결과**

혁신본부

-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정책에 대한 **기획 총괄 원칙**
- 집행기능 없이 **기획·조정·평가에 충실**
- 인력 총원은 **교육부·타부처·민간출신**으로 각 1/3씩

▶ **現在**

- 인적자원개발기본법(기능관련) : 입법예고 후 법제심사 중
- 정부조직법(조직관련) : 당정협의 후 법제심사 중

Ⅲ. 국가인적자원정책 추진체제 개편(안)

1) 국가인적자원위원회(30인정도)

- 위원장 : 대통령
- 부위원장 : 교육부총리
- 정부위원 : 관계부처 장관,
국정과제 위원장 :사람입국특위,균형발전위,교육혁신위,고령화위원회 등
- 민간위원 : **경제계**(전경련, 경총, 대한상의,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) 및
노동계(민노총, 한노총) 등 **수요측 대표**
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
- 산하 **운영위원회,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** 설치

■ 구성(안)

국가인적자원위원회

- 위원장 : 대통령
- 부위원장 : 교육부총리
- 위원 : 관계부처 장관, 국정과제위원회 위원장, 산업계·노동계·국과위 민간위원 등 30인

운영위원회

- 위원장 : 인적자원혁신본부장
- 안건 사전 검토 등

특별위원회

- 위원장 : 교육부총리
- 산학협력, 여성인력 정책

전문위원회

- 위원장 : 인적자원혁신본부 1급 공무원
- 인적자원개발 중장기 투자계획 수립, 사업 조정·평가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 등

2) 인적자원 혁신본부

■ 주요업무(정책의제 관련)

실/국 수준		과(팀) 수준
기획조정실	국가전략 인력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첨단분야 고급 인력 양성 • 고급 전문서비스 인력 양성 • 여성 인력 양성
	직업교육 훈련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대학에서의 직업교육체제 혁신 • 직업교육 - 직업훈련간 연계
	인적자원 투자심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RD 사업의 조정 • HRD, R&D 투자 연계 조정
	인적자원 평가기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HRD 정책 및 사업의 평가
인적자원 정책국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산학협력 정책 • 인력수급 정책 •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 등

※ 구체적인 조직은 기획단, 교육인적자원부, 행정자치부와 협의 후 확정

■ 평가·조정 및 예산 업무수행절차

1월	조사·분석·평가계획 수립·통보	- 국가인적자원위원회(혁신본부) →관계부처
2월말	조사·분석·평가 자료제출	- 관계부처→국가인적자원위원회 (혁신본부)
3~5월	조사·분석·평가 완료 및 결과보고	- 국가인적자원위원회(혁신본부)
6~7월까지	인적자원개발사업 조정(안)확정 및 예산처 통보	- 국가인적자원위원회(혁신본부)
8월	예산편성에 반영	- 기획예산처

※ 과학기술혁신본부 업무수행절차 준용

IV. 관련법률 개정 주요내용

■ 인적자원개발기본법(기능관련)

- 「국가인적자원위원회」 소관 정책의제(Agenda) 설정

현행

제7조 제2항(인적자원개발회의)

- ▣ 부처간 조정 필요한 인적자원개발정책



개정(안)

제7조 제2항(국가인적자원위원회)

- 첨단고급 인력 개발
- 고급 전문 서비스 인력 개발
- 여성 인력 개발
-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정책
- 산학협력, 인력수급 정책
-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
- 군·공공부문·취약계층 인력 등 주요분야

● 국가인적자원개발 ‘投資’ 관련

● 정부내 HRD투자사업에 대한 평가 및 조정 기능

개 정(안)

제7조 제2항(국가인적자원위원회 심의사항)

- 매년도 정부가 추진하는 인적자원개발사업의 조정 및 평가 이와 관련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

● 정부내 HRD투자사업과 R&D투자사업간 연계

개 정(안)

제8조(인적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조사·분석·평가)

- HRD 투자사업과 R&D 투자사업과의 연계·조정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협의하되,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

■ 정부조직법(조직관련)

현행

제28조 제1항(교육인적자원부)

-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~~에 관한~~ 사무를 관장

<신설>

개정(안)

제28조 제1항(교육인적자원부)

-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수립·총괄·조정·평가~~에 관한~~ 사무를 관장

제28조 제2항(교육인적자원부)

-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1인을 두되, 정무직으로 함

V. 향후 추진 계획

'05. 5월

- 정부내 입법절차 조속 완료후 법률개정안 6월국회 제출

'05. 7월

- 관련 시행령, 직제 개정 등 착수
 - 법률 통과 직후 하위법령 개정추진
- 주요 반영 사항 :
 - 조정·평가 대상이 되는 각부처 인적자원개발 사업 범위 구체화
 - 예산조정 관련 혁신본부의 업무수행 절차 명확화
 - 교육인적자원부 집행사업의 타부처 이관 등

'05. 8월

- 인적자원혁신본부 공식 출범

A group of people in a dimly lit room, possibly a meeting or presentation, with the text '감사합니다' overlaid.

감사합니다